■ 전파법 시행규칙 [별지 제35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(www.emsip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무선국 변경신고서

(「전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)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
신고인	법인명		법인등록번호	
	주소 (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)	(-) 담당자: 전화: 팩스: 전자우편:		
무선국 관계사항	무선국 종별		신고번호	
	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			
	수리일			

「전파법」 제19조의2제1항제3호, 제22조의2제1항 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선국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전파관리소장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「전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(다만,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31조제4항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2. 「전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무선국 신고증명서	→	발급

신고인 처리기관: 전파관리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